

『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3월 15일

나. 발 의 자 : 윤종호, 김상조, 김성현, 김수민, 김태근, 박세진,
윤영철, 이수태(8명)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3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3월 16일

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윤종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의장 · 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
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확립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의장 · 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시 당선자 결정기준 변경
(안 제8조제3항)
 - 연장자 → 최다선의원(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)

-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(안 제8조제5항)
 - 발표시간 : 5분 이내
 - 선거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희망하는 직책을 명시한 정견발표 신청서 제출
 - 정견발표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름
- 선거 당일 정견발표 외 질의·토론 등 일체의 발언 금지 및 정견 발표 시 타 의원 지지·비방 발언 금지(안 제8조제6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(회의규칙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남 동 수

○ 본 개정 규칙안은

의장 ·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에서의 당선자 결정기준 변경과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정경험이 많은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의장 ·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

- 의장 ·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에서의 당선자를 현행 “연장자”에서 “최다선의원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”로 변경하고, 해당 선거 실시 전 본회의장에서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, 이 경우 해당 선거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정견발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.
- 또한,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정견발표 외에 질의 · 토론 등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,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 · 비방 하는 발언은 금지하도록 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제3항은 1995.1.1 제정된 것으로 제정당시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였으나,
- 그동안 지방의회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당선횟수도 많아지고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을 다선의원으로 선정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.
- 또한 의장, 부의장 선거 시 정견발표를 통하여 보다 면밀히 신상을 파악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-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